

일본의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I. 머리말

우리나라도 심각한 고령화가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고령사회”로 유명하며, 한국보다 앞선 1970년대부터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해 왔다.

먼저 일본의 고령화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경로의 날’¹⁾을 맞이하여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은 9월 15일 현재 24.1%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이다. 이러한 추세로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9.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저출산화(2011년 합계 특수출산율 1.39 기록)와 맞물려 향후 일본의 인구구조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와 20~64세 인

구(이른바 ‘현역세대’)의 비율을 고려하면, 2010년에는 현역세대 2.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했으나 2060년에는 고령자 1명에 대하여 현역세대 1.2명이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少子高齢化)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국가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교육수준의 발달에 따른 사회진출의 확대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고령부모를 개호 및 보살피오던 여성(특히 맏며느리, 딸 등)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사회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2000년 4월부터 “개호의 사회화”를 모토로 삼고 있는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을 시행하고 있다.

1) 매년 9월 셋째 주 월요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회에 봉사해 온 노인을 경애하고 장수를 축복하는’ 날의 의미를 가진다.

2) 内閣府, 『平成24年版高齢社会白書』, 2013年.

실제로 개호보험법 시행 후, 연간 실수급자 수는 2000년에 149만 명에서 2010년에는 49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호급부비용의 총액도 3.2조 엔에서 6.9조 엔으로 2배 이상 증대되었다.³⁾

그리고 개호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2008년에는 130만 9천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계되나 계속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5년에는 이의 약 2배 정도인 211만 7천 명에서 255만 2천 명 정도의 개호분야 종사자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⁵⁾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분야를 살펴볼 때에 계속 증대될 고령자 개호의 수요에 발맞추어 개호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주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개호종사자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2011년 6월에 개정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介護サービスの基盤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의 개정안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호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되는 개호종사자들과 관계되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제정 연혁

일본의 사회복지 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에 확립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의 분야에서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가 큰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법률에서 '고령자'라는 카테고리에 착안하게 되었던 것은 1963년에 제정되었던 노인복지법(老人福祉法) 이후이다. 이보다 이전에 고령자를 돌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당연히 책임지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예외로써 그러한 사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양로사업(養老事業)'이 생활보호 사업 중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던 요인은 195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전된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령자의 개호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인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 속에서 흩어져 있던 고령자복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의 제정이 요구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의 고령자는 이미 197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고

3) 石橋敏郎, 「介護保険法改正の評価と今後の課題」, 『ジュリスト』 No.1433, 2011.11.15.

4) 일본에서의 '개호(介護)'는 영어로는 'care'에 상당하며, 한국어의 의미로는 '돌봄'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특히 케어(care)라는 단어는 인지증 케어, 개별 케어 등과 같이, 개호와 거의 동등한 단어로써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원문의 그 뜻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개호'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5) 厚生労働省, 「介護分野における人材確保について」, 2009.6.1.

령화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되어, 1973년에 '복지원년(福祉元年)'을 선언하여, 노인의료 무료화제도, 후생연금의 5만 엔 연금실현, 건강보험의 가족 급여율의 상향조정 등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되어 고령자의 의료 및 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를 지탱하는 재정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는 '일본형 사회복지(日本型社会福祉)'의 구축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1982년에 노인보건법(老人保健法)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1987년에 '사회복지사 및 간호복지사법(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을, 1989년에는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高齢者保健福祉推進10ヶ年戦略: ゴールドプラン)'을 수립하여 특별양호노인홈의 확충, 홈헬퍼, short stay, day service, 거택개호지원센터의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플랜의 시행을 위해 1990년에 복지관련 8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고령화는 더욱 진전되어 1994년에는 고령화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어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었다. 따라서 고령자 시책은 폭넓은 분야를 커버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어야만 했다. 이에 1994년에는 골드플랜을 보완한 '신골드플랜(高齢者保健福祉推進10ヶ年戦略の見直し: 新ゴールドプラン)'이 제정되었다.

이에 더불어, 1995년에 제정되었던 고령사회 대책기본법(高齢社会対策基本法)은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바탕으로,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던 협의의 복지의 틀을 넘어서, 취업 및 소득, 건강과 복지,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고령자 시책 전체의 기본이념을 규정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개호 수요의 급증, 가족 개호력의 저하, 이에 따른 사회적 입원 및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에 따라 개호는 긴박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재택복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설복지뿐만 아니라 재택복지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97년 말에 기존의 '조치형(措置型)' 복지에서 '계약형(契約型)' 복지로 전환하는 개호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다음 해부터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골드플랜 후의 고령자보건복지 시책의 방침을 제시하는 '골드플랜 21(今後5ヶ年間の高齢者保健福祉施策の方向: ゴールドプラン21)'이 발표되었으며, 200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호보험법(介護福祉法)'이 시행되게 되어, 새로운 재원확보와 서비스 공급의 방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또, 노인복지와 노인의료에 걸쳐 있던 개호의 수요가 통합되어 급부나 비용의 부담도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동안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이었던 노인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대부분을 개호보험법에 양도하고, 기본적 구조의 규정이나 노인복지사업의 규제의 역할에 중점이 옮겨졌다.

Ⅲ.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요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호보험법등개정법'이라고 함)'의 개정안의 내용 중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의 간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87년에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와 개호의 전문직의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법은 총 5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의 자격, 수험요건, 시험 등에 관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과 그 역할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사회복지사(제4조-제38조)
 제3장 개호복지사(제39조-제44조)
 제4장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의 의무 등(제44조의 2-제49조)
 제5장 벌칙(제50조-제56조)
 부칙

아직 한국에는 국가자격으로서의 고령자의 개호를 전담하는 자격사는 없고,⁶⁾ 일본의 개호복지사가 고령자 개호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 개호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특히 동법 개호복지사 제도의 고령자 개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서는 개호복지사를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입욕, 배설, 식사, 기타 개호를 실시하고, 또 그 자 및 그 개호자에 대하여 개호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제정 당초는 개호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의 개호와 마찬가지로, 3대 개호라고 불리는 기본적인 생활행위에 대한 지원이 '개호'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의 법 개정으로 '입욕, 배설, 식사, 기타'의 부분이 '심신의 상황에 따른'으로 개정되어, 개호의 범위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신체개호뿐만 아니라, 특히 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다양화·고도화하는 개호·복지의 니즈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개호복지사가 가져야 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도 신체개호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측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종전에 비하여 고도의 개호의 질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호복지사(및 사회복지사)의 의무에 대하

6) 한국에도 고령자의 개호를 행하고 있는 자격사가 있다. 이는 국가자격사는 아니지만 민간자격사로서 "요양보호사"가 있다. 일본의 개호복지사와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먼저 국가자격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격취득의 방법 및 그 업무의 범위와 역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는 그 담당하는 자가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자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그 업무를 행해야 한다’(제44조의 2)라는 성실의무가 추가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개호보험법 제1조에서 규정된 ‘존엄의 유지’와 호응하는 것으로, 개호복지사가 행하는 개호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개호를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심신의 상황에 따른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2011년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 개요

2000년 4월에 시행되었던 개호보험법은 5년마다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2005년 6월에 개정법이 성립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일부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년 6월에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介護サービスの基盤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성립·공포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개호보험법등개정법은 고령자가 지역에서 자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서비스가 단절되는 부분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호보험법등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의료와 개호의 연계의 강화 등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서비스가 연계하여 요개호자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또 일상생활권역마다 지역 수요와 과제의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개호보험 사업계획을 책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단신이나 중도의 요개호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의 정기순회·수시대응형 서비스나 복합형 서비스가 창설된다. 또 보험자(시정촌 및 특별구)의 판단에 따른 예방급부와 생활지원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시를 가능하게 한다.

또 2012년 3월 말로 폐지예정이었던 ‘개호요양병상’에 대해서는 폐지기한을 유예하였다. 다만, 개호요양병상의 새로운 지정은 행하지 않는다.

2) 개호인재의 확보와 서비스 질의 향상

개호복지사와 일정의 교육을 받은 개호직원 등

에 의한, 객담흡인 등의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 개호사업소에서의 노동법규의 준수를 철저히 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소 지정의 결격요건 및 취소요건에 노동관련법령 위반자가 추가된다.

그리고 공표 전의 조사실시의 의무화가 폐지되는 등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제도의 재검토가 실시된다.

2012년 4월부터 실시가 예정되어 있던 개호복지사의 자격취득 방법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연기였다.

3) 고령자의 주거 정비 등

유료노인홈 등에서의 선불금의 반환에 관한 이용자 보호규정이 추가된다. 또 고령자주거법(고령자의 주거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에 따라 후생노동성과 국토교통성의 연계에 따른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이 촉진되었다.

4) 치매(인지증) 대책의 추진

시민후견인의 육성 및 활용 등 시정촌에서의 고령자의 권리옹호가 추진된다. 또 시정촌의 개호보험사업계획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른 인지증 대책을 한정하여 선정하게 된다.

5) 보험자에 의한 주체적인 대응의 추진

개호보험사업계획과 의료서비스, 주거에 관한

계획과의 조화가 확보된다. 또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모·선고에 의한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6) 보험료 상승의 완화

개호보험료의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의 재정안정화기금을 개호보험료의 경감에 활용하도록 이용하게 된다.

상기의 개정내용을 위하여, 개호서비스와 관계되는 '개호보험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과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일부 개정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관계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과 관계된 주요 개정내용

1)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의 일부 개정 (개호보험법 등 개정법 제5조 관계)

(1) 개호복지사법에 의한 객담흡인 등의 실시
 ① 개호복지사는 객담흡인, 기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의사의 지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2항 관계).
또, 후생노동성령에서는 객담흡인(구강내·비강내·기관카뉴레내부) 및 경관영양(위루, 장루, 경비경관 영양)을 규정할 예정이다.

- ② 개호복지사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의 규정에 관계없이, 진료의 보조로서 객담흡인 등을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한다(제48조의2 제1항 관계).

(2) 인정 특정행위업무 종사자에 의한 특정 행위의 실시

- ① 개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개호복지사를 제외) 가운데 인정 특정행위업무 종사자 인정증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진료의 보조로서 의사의 지시 하에 특정행위(객담흡인 등 가운데 해당 인정 특정행위업무 종사자가 수료한 객담흡인 등 연수의 과정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음)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한다(부칙 제3조 제1항 관계).
- ② 인정 특정행위업무 종사자 인정증서는 개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 특정행위업무 종사자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취득(修得)시키기 위하여 도도부현 지사 또는 그 등록을 받은 자가 행하는 객담흡인 등 연수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도도부현 지사가 인정한 자가 아니면 그 교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4조 제

2항 관계).

(3) 등록연수기관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객담흡인 등에 관한 법률제도 및 실무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 객담흡인 등 연수의 업무를 실시하는 자일 것 등의 요건의 전부에 적합할 때에는 등록연수기관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8조 제1항 관계).

(4) 객담흡인 등 업무 등의 등록

- ① 자신의 사업 또는 그 일환으로서 객담흡인 또는 특정행위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다(제48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20조 제1항 관계).
- ②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의료관계자와의 연계가 확보되어 있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요건에 전부 적합할 때에는, 등록객담흡인 등 사업자 또는 등록특정행위사업자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다(제48조의5 및 부칙 제20조의 제2항 관계).

(5) 기타

-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이 법률의 시행 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의 취득을 마친 특정행위에 대하여 객담흡인 등 연수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졌다는 취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정 특정행위업무 종사자 인정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법 부칙 제14조 관계).

- ② 등록연수기관 및 등록특정행위 사업자의 등록과 객담흡인 등 연수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능을 가졌다는 취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에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법 부칙 제15조 관계).

2)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개정(개호보험법등개정법 제6조 관계)

- (1) 개호복지사법의 자격취득방법의 재검토에 관계되는 개정규정 시행기일의 변경⁷⁾

개호복지사의 자격취득 방법의 재검토에 관계되는 개정규정의 시행기일을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1일로 변경한다(부칙 제1조 관계).

- (2) 기타

개호보험법등개정법의 시행으로 실무경험자에 관계되는 실무자 연수의 수강의무화의 시행

기일은 2015년 4월 1일로 변경되지만, 실무경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실무자 연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11년 가을경을 목표로 실무자 연수의 조기수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성령 등을 책정할 예정이다.

(3) 시행기일

1)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단, 1.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1일), 2)에 대해서는 공포일로 한다.

V. 맺음말

일본에서 고령자의 개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뿐만 아니라 방문개호원(홈헬퍼), 케어매니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하며, 개호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와 간호와의 협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개호직원(자격명칭 및 자격유무를 불문하고 개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총칭함)들은 고령자개호 섹터에서 전문성의 부족과 한정된 업무 범위 및 권한으로 인해, 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밑에 위치하게 되는 등, 그들의 업무와 자격에 비해 과소평가되거나 저평

7)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7년 법률 제125호. 이하 '2007년 개정법'이라고 함)에서의 개호복지사의 자격취득방법의 재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실무경험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실무경험에 더불어, 새롭게 실무자연수(6개월 연수)의 수강을 의무화할 것
- ②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등의 졸업자에 대하여, 새롭게 개호복지사 시험에 대한 합격을 의무화할 것

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더불어 개호분야의 일은 이른바 3D (difficult, dirty, dangerous) 업무로 인식되어 높은 이직률과 계속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호인력의 부족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객담흡인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번 개호보험법 등 개정법을 통하여, 일정의 연수를 거쳐 훈련을 받은 개호복지사 및 개호직원의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객담으로 인한 위급상황에 간호사로부터의 처치를 기다려야 하거나 개호직원들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일련의 의료행위가 신속하고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호복지사 및 개호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되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바이다.

이를 통하여 개호복지사 및 개호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전문성과 업무에 대한 더욱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개호부문에서의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호분야의 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환경과 처우조건 역시 앞으로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회적인 관심과 법정비가 요구된다.

박 수 경

(일본 와세다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문헌

石橋敏郎, 「介護保険法改正の評価と今後の課題」, 『ジュリスト』, No.1433, 2011.11.15.

石橋敏郎·山田晋編著, 『やさしい社会福祉法制』, 嵯峨野書院, 2005.

厚生労働省, 「介護分野における人材確保について」, 2009.6.1.

全国社会福祉協議会, 『老人福祉論: 高齢者に対する支援と介護保険制度』, 社会福祉法人 全国社会福祉協議会, 2011年.

内閣府, 『平成24年版高齢社会白書』, 2013年.

藤田英明·山田芳子, 『図解でわかる介護保険·介護報酬の改正ポイント』, アニモ出版, 2012年.

「国会: 介護保険法等改正法案が成立」, 『労働法令通信』, No.2252, 2011.6.28.

「通達: 介護サービス基盤強化の改正介護保険法の周知(平成23.6.22老発第0622第1号)」, 『労働法令通信』, No.2255, 2011.7.28.

John C. Campbell, 2000, Changing meanings of frail old people and the Japanese welfare state, *Caring for the Elderly in Japan and the US* (Susan O. Long, ed), Routledge.

웹사이트

介護サービスの基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離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http://www.mhlw.go.jp/topics/bukyoku/soumu/houritu/177.html>.